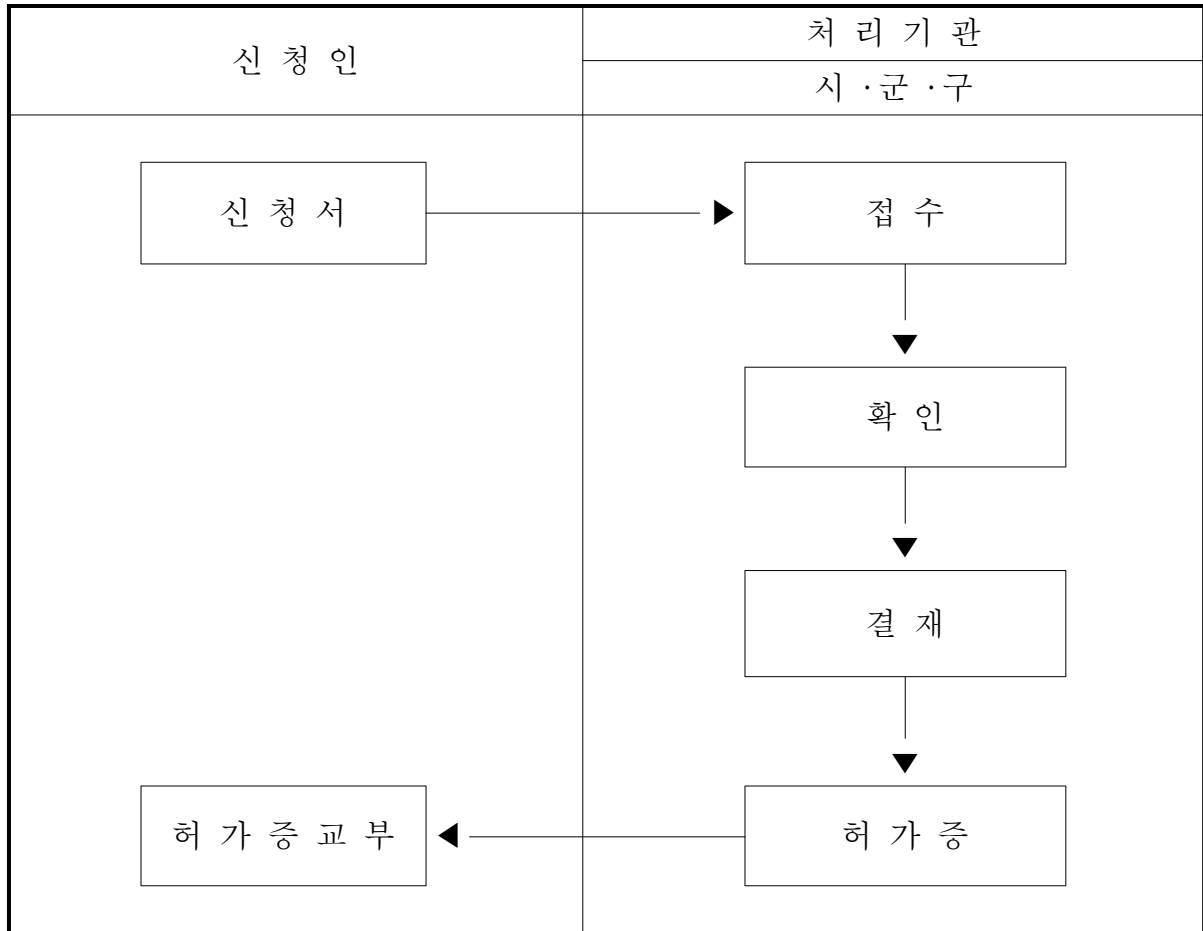


야생동물						☐ 수출 ☐ 수입 ☐ 반출 ☐ 반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 청 인	①상 호(명 칭)				실 수 요 자	④상 호(명 칭)					
	②성명(대표자)					⑤성명(대표자)					
	③사업장소재지 (전 화)					⑥사업장소재지 (전 화)					
수 출 (입) 내 역											
⑦품목 번호 (H.S.)	⑧품 명 (학명,보통명)	⑨규 격 (성별, 연령)	⑩수량	⑪단가	⑫금액 (US\$)	⑬수출 입국	⑭용도	⑮사육장 주 소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반출 및 반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없 음		
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나. 당해 야생동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동물을 말합니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라.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가족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족견본을 말합니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합니다)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III에 당해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바. 수출국에서 인공사육된 야생동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사육한 야생동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작성요령

1. ⑧품명란은 세분화하여 작성하십시오.
2. ⑨규격란은 암수·연령 등을 기재하십시오.
3. ⑩수량란은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하십시오.
4. ⑫금액란은 수출의 경우에는 본선인도가격(FOB), 수입의 경우에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을 기재하십시오.
5. ⑭용도란은 학술연구용·관람용·내수용 등으로 기재하십시오.